

# 식암 김석주의 소차문 연구\*

- 변무소 <因正言趙根避辭辭職疏>의 서술양상을 중심으로 -

이 영 환\*\*

## 국문초록

김석주는 당쟁이 매우 치열한 시대에 살았다. 조선시대에 현종과 숙종 대는 정권을 잡기 위해 여러 당파들이 정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김석주는 왕실의 외척으로서 이러한 정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정국을 주도하였다. 정쟁의 수단으로 바로 소차문이였다. 상대 당파에 대한 공격과 자신을 지켜내는 수단으로 소차문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외척 환경에서 문장가 김석주는 163편이라는 소차문을 남길 정도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활동을 하였다. 소차문은 내용별로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김석주가 가장 많은 글자 수를 할애한 분야가 바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무고함을 입증하는 소차문이었다. 변무소라고 하는 이 분야의 소차문은 상대방의 공격적인 탄핵에 반박을 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이 중심이다. 변무소는 당사자의 생사권과도 직결되는 것인 만큼 다른 분야의 소차문보다 더욱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전개된다. 그중 하나인 <因正言趙根避辭辭職疏>에는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며, 분량적으로도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많은 글자 수를 할애하고 다양한 설득 요소를 활용하였다. 그는 오해받았던 상황을 재현하여 논리성을 확보하고, 진위를 밝히는 데 효과적인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다.

[주제어] 김석주, 소차문, 변무소, 논리성, 설득

##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因正言趙根避辭辭職疏>의 서술 방식 |
| II. 김석주 소차의 현황과 변무소 | IV. 맺음말                  |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 dmsytery@hanmail.net

## I. 머리말

김석주는 29세에 出仕한 이후 줄곧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관료의 길을 걸었다. 그가 관직생활을 했던 시대는 예송논쟁이 치열했던 현종 대와 여러 번의 치열한 환국이 있었던 숙종 대였다. 환국의 결과는 자신의 안위뿐만 아니라 가문의 존폐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51세의 비교적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관직에 있는 23년 동안, 그는 많은 정치적 사건을 겪었다. 김석주의 문집 『息庵遺稿』의 卷10에서 卷16까지 실려 있는, 많은 분량의 疏劄 산문을 남길 수 있었던 것도, 정쟁이 치열했던 시기에 살았던 그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소차의 수신자인 임금을 상대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그의 모든 문학적 역량과 설득 전략이 동원되었다.

김석주는 17세기를 대표하는 산문작가로 명성을 떨쳤는데, 그가 남긴 많은 양의 소차는 이러한 명성을 뒷받침해준다. 김석주의 소차는 여러 문장선집에 뽑히는 등 후대 문장가들에게도 모범이 될 만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김석주의 문학적 업적을 중심으로 학계에서는 소차류 산문에 대한 연구가 선행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석주의 소차류 산문의 전반적인 특징을 구명하면서 문명의식과 선대의 문체와 연결된 점을 밝힌 연구<sup>1)</sup>와 주의를 산문을 엮어서 문체적으로 구명한 연구가 있다.<sup>2)</sup>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김석주가 남긴 방대한 소차류 산문을 만족스럽게 구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당시 정치적인 측면, 논리 전개 구성적 측면, 문체적인 측면 및 김석주 개인의 심경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되지 못한 까닭이다.

소차문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정쟁적인 측면이 있으며 일정한 정형적 형식을 갖추고 있기에 천편일률적이라는 평을 받는다. 그래서 한 문인의 소차문이 여타 다른 문인의 소차문과 차별되는 특징을 찾기란 매우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김석주 소차문의 전체적인 맥락이 앞서 선행 연구에서 진행된 만큼, 이러한 연구의 바탕 위에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연구를 미시적 관점에서 진행하고자 하였다. 상대 당파에 의해 탄핵의 위기에서 쓴 소차문인 변무소는 그 어느 분야의 소차문보다 작가의 치열한 논리 전개와 심혈이 기울여져 있으며 분량 또한 방대하다. 칼날 같은 상대방의 붓끝을 꺾을 수 있는 내용과 구성을 갖추어야 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김석주의 변무소인 〈因正言趙根避辭辭職疏〉에 주목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因正言趙根避辭辭職疏〉는 정언 조근의 탄핵소에 대한 대응으로, 김석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연구의 방법은, 김석주를 탄핵하는 상대 당파의 탄핵소를 먼저 제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김석주의 소차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특정 작가의 소차문만을 대상으로 그 문학적 특징을 구명하려 하였다. 그렇다 보니 어떤 맥락에서 작가의 논리가 형성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주장의 필연성을 논증하기도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대 당파의 탄핵에 맞서 김석주가 펼친 논리 전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문체에서 발휘된 김석주만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

1) 김광년, 「息庵 金錫胄의 疏劄類 散文 研究」, 『동방한문학』 44, 2010.

2) 김대형, 「息庵 金錫胄의 奏議類 散文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김석주의 소차류 산문은 물론 그의 문학적 본질을 구명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일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II. 김석주 소차의 현황과 변무소

〈因正言趙根避辭職疏〉을 살펴보기 전에 김석주 소차의 대략적인 현황과 변무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因正言趙根避辭職疏〉의 미시적인 분석을 발판삼아 김석주 소차의 거시적인 특징을 밝히는 데 기여하겠다는 본 연구의 목적에도 상응하는 과정이 된다. 소차는 주의류 산문의 일종이다. 소차에 관한 연구는 주의류 또는 소차문이라는 범주로 연구되었는데, 역사학계의 연구에서 그 분류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정만조는 소차를 조선 시대의 언론 양식의 하나로 보고, 내용에 따라 辭職疏, 時務疏, 請願疏, 諫爭訴, 彈劾疏로 구분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해놓았다.<sup>3)</sup> 이후 辨誣疏를 더 첨가한 연구가 있다.<sup>4)</sup> 앞에서 언급했듯이 김석주는 163편의 소차를 남겼다.

〈표 1〉 『식암유고』의 산문 작품 현황

권 수	작품 현황
1	辭 2편, 賦 5편
8	書簡 9편, 序 19편, 記 4편
9	傳 2편, 說 3편, 跋 2편, 題後 5편
10~16	<b>疏劄 163편</b>
17	啓辭 28편, 收議 5편, 書狀 1편
18	祭文 25편
19	應製錄 2편, 玉冊文 1편, 教命文 1편, 告祭文 3편, 不允批答 2편, 教書 3편, 致祭文 14편, 表箋 3편, 奏文 2편, 咨 1편, 書契 1편
20	雜著 8편 <sup>5)</sup>
21	贊 1편, 誠 1편, 銘 3편, 策本 3편, 策題 5편
22	行狀 2편, 諡狀 4편
23	墓誌銘 10편, 墓碣銘 3편, 墓表 6편, 碑銘 3편

3) 정만조, 「朝鮮시대의 언론과 상소」, 『담수』 15, 담수회, 1986.

4) 설석규, 「朝鮮시대 유생 상소의 유형과 추이」, 『경북사학』 17-18 합輯, 1995.

5) 雜著의 구체적인 작품은 〈醫訓〉, 〈對堯問〉, 〈答土問〉, 〈答趙聖登月行度數算法問〉, 〈駁末察訪亨曆誤置閏朔議議〉, 〈爲兪進士夏謙代高陽士子通太學文〉, 〈悲池魚文〉, 〈渡迷西遷修治募緣文〉이다.

위의 표에 제시된 것처럼 김석주 산문에서 소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10~16권이 이 문체로 되어 있을 정도로 방대하다. 소차의 특성상 많은 작품을 몇 가지의 범주로 분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형태상으로는 사직소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탄핵소의 성격을 띤 작품이 있으며, 논리에 치우쳐 논사소로 분류되나 내용이 시무를 다루고 있기에 시무소의 성격을 띤 작품도 있다. 또 어떤 작품은 여러 유형의 소차의 특성을 지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 작품이 하나의 류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러나 김석주 문학의 본질을 살펴보기 위해 불안전하나마 그 특징적인 면을 감안하여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김석주의 소차문을 연구함에 있어 범위를 설정하고 하나의 범위로 좁혀서 연구하여 그 구체적인 실체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본고는 김석주의 소차를 분류하면서, 기존 연구의 분류를 참고하되 김석주의 작품에 맞게 별도로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결백을 강조하는 변무소, 상대방의 잘못을 논죄하는 탄핵소, 상황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대죄소, 사안에 대해 합리적 논리를 제시하는 논사소,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시무소로 분류하였다.

김석주 소차의 경우 사직소는 사직을 걸고 특정사안에 대해 호소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직 자체에 대한 언급보다는 특정사안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일 뿐 아니라 사직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거의 없다. 그래서 분류에서 제외했고, 간쟁소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임금을 경계한다는 점에서 시무소와 중복되기 때문에 본고에는 이것을 시무소에 편입시켰다. 대죄소는 변무소 및 탄핵소와 더불어 급변하는 정국에 임하면서 긴박하게 살았던 작가의 특성상 다수가 보이므로 새롭게 첨가하였다.

상소의 제목만으로 분류를 시도하는 것은 완벽한 분류가 될 수 없다. 사직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다양한 경우에 사직을 걸고 상소를 올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할 작품도 제목은 사직소가 붙어있으나 사직의 배수진을 치고 무죄를 호소하기 때문에 내용상 변무소로 분류한 것이다.

대죄소가 자신의 죄가 분명하거나 죄가 되지 않을 상황을 부풀려 죄를 청하는 형식의 글이라면, 변무소는 생사를 걸고 치열하게 현실적으로 무죄를 증명하는 종류의 소차문이다. 또한 김석주는 외척의 신분에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당쟁에서 우위에 있었다. 자신의 사춘 누이가 현종의 비로 있었기에 김석주를 탄핵하는 상소를 좀처럼 올리지 못하였다. 힘의 균형에서 김석주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조는 김석주의 소차문을 평가하면서 “식암 김석주의 문장은 절대 쉽게 배울 수가 없다. 필력이 막힘이 없어 구름 위를 나는 기상이 있고, 격조는 건실하고 짜임새는 단단하여 땅에 던지면 쇠와 돌 소리가 날 지경이다. 소장은 말이 간결하고 뜻은 통창하니 더욱 뛰어나다”<sup>6)</sup>라고 하였다. 김석주 소차문의 짜임새와 논리력에 대한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는 정조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선집에 김석주의 글 중 유독 소차문이 많이 뽑혀있는 것을 미루어볼 때, 상당히 검증된 평이라 할 수 있다. ‘땅에 던지면 쇠소리가 날 정도’로 탄탄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김석주 소차문의 특징이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상대 당파로부터 탄핵을 당했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서술하는 변무소에 집약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6) 『弘齋全書』 卷161, 「日得錄」 1, 文學, “金息庵文章, 絕未易學得. 筆力翩翩, 有凌雲之氣, 格調豪健, 結構勁悍, 擲地有金石聲, 疏章辭簡而意暢, 尤可喜.”

### Ⅲ. 〈因正言趙根避辭辭職疏〉의 서술 방식

辨疏는 억울하게 탄핵받은 사항에 대해 결백을 호소하고, 변론을 통하여 무고함을 밝힘으로써, 수신자인 임금에 처벌을 거두어들이게 하는 목적으로 쓰인 글이다. 탄핵의 대상은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이 될 수도 있다. 변무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백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것은 탄핵을 추진한 상대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힘든 일이다. 탄핵을 주도해 탄핵소를 올린 사람도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상당한 위협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와 치밀한 구성으로 탄핵소를 작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무소는 자신의 주장을 잘 펼친다고 해서 무죄의 소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에 상대방의 필력과 세력을 잘 살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무소는 탄핵을 주도한 사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본인과 관련된 혐의의 결백을 밝혀냄으로써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게다가 탄핵을 주도한 사람은 한 번의 탄핵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피탄핵자가 변무소를 올리면, 이에 반박하는 2차, 3차의 탄핵소를 연달아 올린다. 따라서 피탄핵자는 탄핵소가 올라가는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疏나 啓를 올려 맞대응해야 한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이 된 소차도 탄핵자와 피탄핵자인 김석주 간에 여러 번의 소차가 오가면서 탄핵소와 변무소가 여러 차례 임금에게 제출되었다. 특히, 탄핵한 주체는 대상에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혐의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집요하게 탄핵을 요구한다. 더구나 그런 혐의점이 공론화되어 당연시되고 있을 때는 임금을 상대로 그 무고함을 밝혀내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함을 변론하는 과정은 여타 분류의 소차와는 다르게 혐의의 근거를 찾아 조목조목 밝혀내지 않으면, 탄핵자의 예리한 논리를 꺾을 수 없고 결국 변무소의 수신자인 임금을 설득시킬 수도 없다.

〈因正言趙根避辭辭職疏〉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正言으로 재직하던 조근(1631~1690)이 引避하는 사직소에 김석주의 이름을 거론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김석주 본인도 사직으로 맞서면서 올린 글이 〈인정언조근피사사직소〉이다. 정언은 임금에 대해 간쟁을 담당한 사간원에 속한 정육품 벼슬이다. 좌·우정언 두 명을 두었는데, 비록 품계는 낮으나 관리의 비리, 비도덕적 행위 등을 임금에 직간하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하였다. 더구나 정언을 맡는 사람은 충직하고 청렴한 자질을 인정받아서, 정언이 문제 삼는 내용은 회피하기 어려웠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정언은 사간원 소속의 관리로서, 김석주와 같이 영향력이 큰 인물을 탄핵하는 경우에는, 정언의 단독 결정이라기보다는 사간원이라는 조직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김석주가 정언 조근으로부터 탄핵을 받은 사연은 다음과 같다. 1670년에 치러진 殿試에서 김석주는 시험을 감독하는 고시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급제한 이담명(1646~1701)의 답안지가 문제가 되었다. 문제는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이담명의 답안지에 결격사유로 문제가 될 만한 점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담명이 응시했던 과거시험은 책문 과장이었다. 책문은 임금이나 시험을 관장하는 관리가 문제를 내고, 이에 대해 응시자들이 그 해결책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책문을 서술하는 형식은 정형화된 틀이

있으며 그것을 준수해서 써 내려가야 한다. 이담명의 답안지에는 형식을 따르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이담명의 아버지인 이원정(1622~1680)이 시험 과정에서 아들의 급제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시험지를 채점하는 과정에 이원정이 참여하였고, 아들의 답안지를 놓고 고시관들에게 일종의 사인을 보냈다는 혐의였다. 김석주와 같이 시험을 관장하는 관리로서는 이러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집어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역할을 못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런 문제로 당시 정언의 직책을 맡고 있던 조근은, 시험의 공정성을 문제 삼며 두 차례에 걸쳐 꺾을 올려 이원정·이담명 부자를 탄핵하였다. 그중 두 번째 꺾에서 김석주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조근이 올린 계문에, 고시관인 김석주도 과거시험의 관리 소홀과 더 나아가 부정행위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김석주는 이에 대해 두 가지 문제에서 무죄를 호소하기 위해, 자신의 직책을 내려놓으며 <인정언조근피사사직소>를 올리게 된다.

## 1. 자신을 논죄하는 상대방 주장의 분석

변무소가 탄핵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김석주의 상소를 분석하기에 앞서 조근의 소차문인 <諫院請試官李元禎罷職及第李聘命拔榜啓>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계문은, 자기 아들이 참여하는 시험을 감독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원정을 파직하고 그 아들 이담명의 급제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그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科場의 일은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시험을 감독할 때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공정하게 인재를 취한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새로이 급제한 이담명은 試官 이원정의 아들입니다. 담명의 대책 가운데 세 곳에서 聖策의 위에 ‘臣伏讀’ 세 자를 쓰지 않았으니 격식에 매우 어긋나고 표식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試官들이 의문을 품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원정은 자신이 등제하였던 글을 가지고 감히 증명하여 자신의 아들을 마침내 합격자 속에 들게 하였습니다. 합격자의 이름을 발표한 뒤에는 “試券을 처음 읽었을 때 이미 우리 아이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러나 피하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함께 들어갔던 試官이 그 말을 듣고 전해왔습니다. 만약 이원정이 모르고 증거를 댔다면 혹시 용서할 수도 있지만, 이미 알고 피하여 나갔으면서 또 어찌 감히 가깝다는 혐의를 피하지 않고 몸소 당락의 사이에 말을 하였단 말입니까...(중략)...

격식을 어긴 것이 발각된 후에는 내용의 좋고 나쁨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말로 인하여 결정을 하였으니 더욱이 사사롭다는 혐의에 저촉됩니다. 이에 이것을 그냥 두게 되면 온 나라 사람의 의혹을 풀 수가 없고, 오늘 이후의 폐단을 막을 수 없습니다. 試官 이원정을 파직하여 서용하지 마시고 급제한 이담명을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소서.<sup>7)</sup>

7) 趙根, 『損菴集』卷2, <諫院請試官李元禎罷職及第李聘命拔榜啓>, “科場事體, 至嚴且重, 考試之際, 如有一毫濫雜之事, 則取人以公之意, 果安在哉, 新及第李聘命, 卽試官李元禎之子也, 聘命對策中三處聖策之上, 皆不書臣伏讀三字, 違格大矣, 有表明矣, 諸試

격식을 어겼다는 것과 표식을 했다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상소를 올린 상황이었다. 김석주도 이미 이에 대응하여 1670년 11월 14일에 상소를 올려 해명을 마친 상태였다. 책문의 형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고, 이것이 하나의 표식이 되어 누구의 답안지인지 알아챌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책문을 쓰는 응시자라면 누구나 정해진 형식에 맞게 글을 쓰는 연습을 한다. 또한 책문 시험을 위해 모범답안을 모아 놓고 서술 방식까지 자세하게 적어놓은 『책문준적』이라는 일종의 수험서까지 있는 상황에서, 형식을 지키지 못한 것은 큰 결함이며, 이는 하나의 표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과거시험 과목인 策文은, 임금의 물음에 따라 초장·중장·종장으로 나누어 서술해야 하는데, 각 장마의 첫머리는 ‘臣伏讀’이라는 글자로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이담명은 이것을 생략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격식에도 위배됨은 물론, 이렇게 생략하는 방식이 일종의 표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석주는 ‘신복독’은 관례상 생략하는 경우도 많으며, 예전의 시험에서도 이 문구를 생략한 답안지가 있었으나, 문제 되지 않고 용인되었으니 표식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신복독’ 대신에 ‘雙擎跪讀’을 썼으니 격식에도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다.<sup>8)</sup>

그러나 이 啓文에는 ‘함께 들어갔던 고시관이 그 말을 듣고 전해왔습니다.’라고만 했을 뿐 김석주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함께 들어갔던 고시관’은 바로 김석주였고, 이원정의 편에서 그를 옹호하는 말을 전했던 것인데, 조근은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석주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원정·이담명 부자의 행위를 문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발생하였다. 조근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담명의 합격은 취소되지 않았다. ‘臣伏讀’을 쓰지 않은 것은 형식을 따르지 않은 문제가 있으나 문제되지 않는 선례가 있었고, 그러한 선례가 있었던 만큼 표식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조근은 자신의 1차 상소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因嚴批引避啓>를 잇달아 올린다. 김석주가 변무소를 올리게 된 이 啓文에는 김석주의 이름이 중요하게 거론된다.

지난 諫臣들이 대략 아뢰던 것은 또한 風聞에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賓廳에서 올린 啓辭는 泛然히 스스로 밝혀지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하께서만 자세히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원정이 그 아들의 試券을 처음 읽었을 때 일어나서 피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격식을 어긴 것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자기의 對策으로 그것을 증명하였다.”라는 말과 試券을 이미 열어보고는 “당초에 내가 이미 내 아들의 글인 것을 알았다”고 한 말들은 모두 그때 참고관이었던 김석주가 전한 것입니다. 빈청에서 계사를 올릴 때 곡절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어찌 또한 事勢가 급박해서였겠습니까? ‘聖策’의 위에 반드시 ‘臣伏讀’ 세 글자를 쓰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정해진 規式입니다. 국가 수 백 년 이래로 이 規式을

官持疑未決之際，元禎敢以自己登第之文爲其證明，得使其子終至參榜，及其圻號之後，乃曰試券初讀之時，已知吾兒之作，故退避不參云，同入試官，新聽其言而傳之，如使元禎不知而證之，則容或可恕，初既知而避出，則又何敢不避嫌逼，以身質言於立落之關乎，…(中略)…違格發覺之後，則不可論製述之好否，而取決於其父之一言，尤涉嫌私，此而寘之則無以解國人之疑，無以杜日後之弊，請試官李元禎罷職不叙，及第李聘命拔去榜中。”

8) 『顯宗實錄』 11年(1670) 11月 14日條.

쓰지 않고 等第한 사람은 도무지 아무도 없는데, 이원정 부자가 유독 이 規式을 쓰지 않았으니 다만 격식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표식을 한 것입니다.<sup>9)</sup>

1차 탄핵문과는 달리, 이 탄핵문에서 조근은 함께 들어갔던 시관으로, 말을 전한 사람이 김석주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조근은 책문의 격식을 어기고 급제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격식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표식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수 백 년’ 수 개념과 “도무지”라는 표현으로, 이와 같은 전례가 없었음을 밝혔다. 조근의 이 소차문은 1670년 11월 26일에 올린 것인데,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김석주는 이미 변론을 했다. 이에 〈인정언조근피사사직소〉에서는 남아 있는 문제인, 본인의 이름이 거론된 것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소명에 집중하고 있다. 〈인엄비인피계〉에 考試官으로 참여했던 김석주 자신의 이름이 직접 거론된 이상, 이 사안과 본인이 연루되었다는 혐의까지 더해지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인정언조근피사사직소〉를 올리게 된 것이다.

## 2. 소문의 허구성 입증

탄핵은 사실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탄핵자가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으나 합리적 의심이 되는 부분이나 소문이 무성한 경우, 그 사실 여부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조근은 이러한 방식을 썼고, 이에 대해 김석주는 소문의 허구를 밝히고 합리적 의심에 대해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그 중심 내용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사직을 청하면서 결백을 주장한 것이다. 〈因嚴批引避啓〉에서 탄핵의 주체는 조근이며, 탄핵의 직접적인 대상은 이담명과 이원정이고, 간접적인 문책의 대상은 김석주 본인이 되는 셈이다. 만약 이담명이 낙방으로 처리된다면, 이원정과 이담명은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시험을 감독한 김석주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즉, ‘그 아버지의 말로 인하여 결정을 하였으니 더욱이 사사롭대取決於其父之一言, 尤涉嫌私’는 조근의 주장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김석주도 시험을 엄중하게 감독하고 공정하게 인재를 뽑아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다.

김석주의 반론이 담긴 〈因正言趙根避辭辭職疏〉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다.

① 삼가 아뢰옵건대 신이 殿試 고시관이 되어 시험을 감독할 때 외람되게도 對讀의 끝줄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程式에 어둡고 또 語默을 잘못하였으며 끝내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떠들어 말하게 되었고 간관들이 소를 올리게끔 되었습니다. 비록 대신의 반열에 있어 죄를 기다리는 정성을 대략 드러내었지만 그 疏에 대한 批語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곧 臺閣의 탄핵이 아직 결정되기 전인데,

9) 趙根, 『損菴集』卷2, 〈因嚴批引避啓〉, “頃者諫臣之疏陳, 亦非由於風聞, 而特以賓廳啓辭, 泛然自明之故, 殿下獨未之詳知也, 元禎當其子試券之始讀也, 則起避而不參, 違格之未定也, 則以己之對策而證之, 試券之既坼也, 則又曰當初吾已知吾子之文云云, 此等說話, 皆其時參考官金錫胄之所傳也, 賓廳啓辭之時, 不能明言曲折者, 豈亦拘於事勢之致耶, 聖策之上, 必書臣伏讀三字者, 乃是不易之定規也, 國家累百年來, 都無一人不用此規而登第者, 元禎父子獨不用此規, 則不但爲違格也, 是有表也.”

하물며 지금 이담명을 낙방시켜야 한다는 啓辭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는 격식을 위배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표식을 썼다는 것이며, 셋째는 그 아버지의 한마디 말로 결정하였으니 더욱 혐의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 가지 문제만으로도 두려움을 금할 수 없을 지경인데 正言 조근의 引避하는 말에서는 또 신 한 사람만을 들어 증거를 삼았습니다. 신은 진실로 놀라고 두려우며 특히 古人의 金緘의 경계에 부끄럽습니다.<sup>10)</sup>

①은 이 상소의 첫머리로 조근이 啓를 올리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김석주가 본인의 상소에서 조근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기 위해 조목을 세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긴 상소문의 서두로서 진행 방향을 독자인 임금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즉, 조근이 밝힌 문제점을 따라가면서 하나씩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김석주는 본인이 시험의 定式에 어둡고 말을 잘못하여 諫官에 의해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상황을 밝히는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한 批答이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시험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당연시하듯이 이담명을 낙방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자, 이 상소를 올리게 되었다고 상소의 동기를 서술하면서 서두를 시작하고 있다.

조근이 문제 삼은 것은 이담명이 제출한 책문의 試券에 논쟁거리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담명의 아버지 이원정이 당락에 간여했다는 혐의까지 더하여 啓를 올린 것이다. 혐의의 근거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이담명이 답안을 적을 때 정해진 형식을 위배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담명의 답안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식을 했다는 것이며, 셋째는 당락을 심사하는 순간에 그 아버지인 이원정의 영향력이 개입되었다는 것이다. 김석주는 이미 이 세 가지 혐의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결백함을 밝혔기 때문에 이 소차문에서는 세 번째 문제인 아버지 이원정의 개입여부에 집중되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석주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과도 직접 관계있는 일이었다.

② 조근이 운운한 바는 대체로 모두 신이 승지 이익과 주고받은 말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신이 이익에게 말할 때는 “담명의 시권을 처음 입을 때에 이원정이 즉시 일어나 나갔다.”라고 했을 뿐인데, 지금 떠도는 소문을 듣고 낙방시켜야 한다고 논하는 자들은 반드시 “원정이 잠깐 피하였는데 그 잠깐 피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대개 반드시 원정이 곧 돌아와 考課에 참여하려는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이 이익에게 말할 때는 “담명의 對策文을 다른 곳에 둔 것은 우등이라고 적으려던 것이며 원정이 들어와 이야기할 때에 이르러서는 그 글이 눈앞에 있지 아니한지 이미 오래였다.”고 하였는데, 지금 떠도는 소문을 듣고 낙방시켜야 한다고 논하는 자들은 반드시 “당락을 논란하는 때였다.”고 하고, 또 반드시 “당락의 관건이 달려 있었다.”고 하고, 또 반드시 “격식을 어긴 것의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논란하는 때였다느니, 관건이 달려 있었다느니, 정해지지 않았었다느니 하는 것은 반드시 담명을 사사로운 과정으로 급제한 자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sup>11)</sup>

10) 金錫胄, 『息庵遺稿』 卷11, 〈因正言趙根避辭職疏〉, “伏以臣於殿試考試時, 猥忝對讀之末列, 始昧於程例, 且失於語默, 終致人言喧沓, 諫臣陳章, 雖從大臣之後, 略暴俟罪之愆, 而厥疏未得批下之前, 則便是臺彈之未及發落者, 況今李聘命拔榜之啓已發, 一則曰違格, 一則曰有表, 一則曰取決於其父之一言, 尤涉嫌私, 只此三關節, 已不勝悚慄之至, 而正言趙根之避辭, 又復單舉臣身, 以爲證援, 臣誠駭然瞿然, 殊自愧於古人金緘之戒也.”

②는 당시 고시관들이 말한 ‘담명의 시권을 처음 읽을 때에 이원정이 즉시 일어나 나갔다.’는 말의 진상에 대한 소명이 중심 내용이다. 앞의 두 문제는 격식과 표식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적인 소명이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당시 시험관으로 참여했던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개입되었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채점하던 당시의 상황을 신빙성 있게 정확히 재현해 내지 못하면 김석주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석주는 그 상황을 재연하기 위해 본인과 李翊(1629~1690)이 실제로 주고받은 말과 문제가 되는, 떠도는 소문을 나란히 열거하고 있다.

상황1	실제상황	담명의 試券을 처음 읽을 때에 이원정이 즉시 일어나 나갔다.
	소문	원정이 잠깐 피하였는데 그 잠깐 피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대개 반드시 원정이 곧 돌아와 考課에 참여하려는 의도였다.
상황2	실제상황	담명의 대책문을 다른 곳에 둔 것은 우등이라고 적으려던 것이며, 원정이 들어와 이야기 할 때에 이르러서는 그 글이 눈앞에 있지 아니한 지 이미 오래였다.
	소문	당락을 논란하는 때였다. 당락의 관건이 달려 있었다. “격식을 어긴 것의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가지의 말을 동시에 연쇄적으로 열거하여, 수신자인 임금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당시 채점하는 장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 즉, 이담명의 시권을 채점할 당시에 이원정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증명되었기에 그의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밝혀졌다. 첫 번째 말에서는 이원정이 즉시 일어나서 나간 것은 맞지만 소문에서 말하는 ‘考課에 참여하려는 의도’는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말에서는 이원정이 답안지를 채점하는 장소에 들어온 시점에 관한 것이다. 실상은 이미 우등으로 결정이 난 때였는데, 소문에는 당락이나 違格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때이기에 이원정의 개입으로 합격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이 떠돌았던 것이다. 김석주는, 조근이 탄핵소에 적은 대로 자신이 한 말들이 사실이지만, 거짓된 소문은 이원정의 말을 자의적으로 추측하고, 정확한 실상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확대 생산되었음이 밝히고 있는 것이다.

### 3. 상황의 재현을 통한 무죄의 입증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이 설명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무죄가 입증되기 위해서도 정확하고 짜임새 있는 상황의 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석주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의심받는 상

11) “위의 책”, “根之所云云者, 大抵皆由於臣之與承旨李翊酬酢之語, 臣之語翊, 則曰當聘命試券之始讀也, 李元禎即爲起出而已, 今之得於傳聞而爲拔榜之論者, 則必曰元禎乍避, 其所謂乍避者, 蓋必欲謂元禎旋入而參考者也, 臣之語翊, 則曰聘命之策, 既置別處, 將書優等, 而及乎元禎入來答話之時, 則其文已不在眼前久矣而已, 今之得於傳聞而爲拔榜之論者, 則必曰橫難之際, 又必曰立落之關, 又必曰違格之未定, 其所謂際也關也未定也者, 蓋必欲謂聘命因私而獲第者也.”

황을 대화를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재현하며 서술하였다. 탄핵자인 조근은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한 사건의 편린을 엮어 탄핵하는 논리를 구성하였다. 이런 점에서 김석주가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었다. 조근은 상황을 전해 듣고 불법적인 부분을 포착하여 탄핵소를 구성하였고, 김석주는 사건의 당사자로서 직접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논리를 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김석주는 조근이 제시한 편린들을 실제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결백을 주장하였다.

③ 또 이들이 서둘러 큰 꼬투리로 삼는 것은, 원정이 “내 우리 아이의 글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 한 마디의 말입니다. 이는 殿試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에 저와 여러 사람이 원정에게 축하하면서 이에 이원정에게 “우리들이 考課하는 때에 공께서는 어찌 아드님의 글을 알아보셨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이원정이 대답하기를 “아들의 글은 아버지가 평상시에 가르치는 것인데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그대들이 몇 줄 읽었을 때 나는 일어나 나갔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원정은 자신이 그의 아들의 당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어렵지 않게 한 것이었고, 신들 역시 그 아버지의 말이 있어서 그 아들을 뽑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 사람들이 원정을 의심하기를 마치 도끼를 잃은 자가 이웃을 의심하는 것처럼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웃사람의 말과 행동과 뜻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도끼를 훔치지 않은 것입니다.<sup>12)</sup>

③은 이원정이 직접 말한 ‘내 우리 아이의 글이라는 것을 알다’의 진상에 대해 소명한 것이다. 이원정이 이렇게 말한 것은 본인이 아들의 당락에 간여하지 않았기에 당당하게 말한 것인데, 탄핵하는 사람은 그 말에 혐의를 두어 아들의 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향력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삼은 것이다. 김석주는 그 말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다른 측면으로, 이원정이 당락에 개입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것은 당시 대화상황에서 탄핵하는 자들이 단지 ‘내 우리 아이의 글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이원정의 말만을 문제 삼았는데, 그런 말이 오갔던 상황문맥을 제시한 것이다.

김석주는 우선 대화상황이 채점 결과가 나온 이후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것은 결백을 밝히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김석주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원정에게 이담명의 글을 알아봤느냐고 물은 시점은, 당락이 결정된 뒤 합격자가 발표되는 날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원정은 아들의 글임을 알아차린 이유로 특별한 표식이 아니라 평소에 아버지로서 글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탄핵하는 자들이 문제 삼은, 이원정의 부분적인 말은 이 疏에서 밝힌 대로 대화의 시점과 상황으로 결백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 제시되면서 결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런 과정은 결국 김석주가 사사로이 그 아버지의 말에 의해 이담명을 급제자로 뽑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주게 된다.

12) “위의 책”, “且其衆所急持以爲大樞柄者，在於元禎吾知吾子之文之一語，此則殿試拆號之日，臣與諸人相與賀元禎，仍問元禎曰，吾輩考校之際，令公豈果能猜出令子之作乎，元禎曰，子之文，父之所常教也，夫豈不知，當初君輩讀過數行，吾果然起出矣，元禎既自恃無所干預於其子之立落，故爲此言而不以爲難，臣等亦未嘗有待於其父之言而取其子，故聞此言而不見可疑，實不料今人之疑元禎，有若亡鉄者之疑隣人，隣人之言動意態，無爲而不竊鉄者也。”

④ 신이 빈청에서啓를 올리는 당일에 이 한 말을 아울러 올려서 이원정에 관한 정확하지 못한 실상을 밝히고자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大臣과 諸臣의 뜻을 들어 생각해보건대, 오늘 급급하게 대죄하는 것은 남이성의 疏 가운데 ‘경솔하게 수취했다’는 한 조목에 대해 자변하는 것이 될 뿐이라고 하므로, 지금 만약 拆榜 후의 말들을 거론한다면 이것은 오로지 이원정만을 위한 것에 가까울 것이고, 지레 諫臣과 다투는 것은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에 감히 다른 말을 더 올리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이미 격발된 의논을 끝내 막을 형세가 없고 이미 나온 말을 끝내 덮을 이치가 없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렇게 더러운 말을 올릴 뿐입니다.<sup>13)</sup>

④에서는 간관들이 탄핵했을 당시 김석주가 직접 위와 같은 상황을 밝힐 수 없었던 점을 설명하였다.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에 ③에서 언급했던 본인과 이원정과의 대화를 제시했으면 곧바로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었음에도 여러 가지 법도에 맞게 하려고 참고 있었다고 했다. 이것은 본인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일의 절차를 기다렸다는 것인데, 본인의 결백을 강조함은 물론 일의 절차를 중요시하는 본인의 자질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이다. 김석주는 지금까지 실상을 밝히지 않고 미룬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경솔하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이원정만을 편든다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諫官과 다투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 두 번째로 제시된 이원정과의 거리두기는 본인의 결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김석주 본인이 이원정의 부정을 덮어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만약에 이원정이 채점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적발하여 조치했을 것이라는 것까지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4. 반복을 통한 강조와 개인적 소회를 통한 호소

반복의 기법은 강조하는 효과를 위해 흔히 쓰는 기법이다. 김석주는 같은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지 않고, 다른 사항을 언급하다가 한참 뒤에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을 거듭 서술하여 임금을 설득하고 있다. 또한 아무리 논리적인 글이라 하더라도 논조가 고조되어 높게 치닫기만 한다면 임금과 같은 의사 결정권자가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김석주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높였던 어조를 차분하게 낮추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서술하면서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임금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수신자로 하여금 차분하게 본 사건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효과를 거두었다.

⑤ 아! 사람의 얼굴을 그리면서 그 터럭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참모습이 아니게 되고, 사람의 말을 모사하면서 한 句 한 字를 잘못하면 그 실정이 아니게 됩니다. 허물며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은 목소리와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진솔한 마음을 아는 경우와는 반드시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길거리의 말을 편벽되게 믿는 사람들은 대신 이하 예닐곱 사람이 힘써 간쟁하는 말을 매번 분명히 듣고서도,

13) “위의 책”, “臣於當日賓廳陳啓之時, 非不欲并及此一語以明元禎疏率之實狀, 顧竊聞大臣及諸臣之意, 以爲今日之汲汲待罪者, 只爲自卞南二星疏中率易收取之一款而已, 今若蔓及拆榜後語言, 則此近於專爲元禎分疏, 徑與諫臣相較, 宜不可爲也, 遂不敢添插它語而退矣, 苟非如此, 則夫豈不知已激之議, 無終遏之勢, 已發之言, 無終掩之理, 而姑爲此次汶而已乎.”

물에 돌을 던진 듯 한갓 자취만을 고집하는 견해를 지키고 실정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으니, 신은 삼가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신의 이 말을 다만 政院이 들었을 뿐 아니라 온 관아의 관료들이 듣지 않은 사람이 없고, 관료들만이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간원의 두 신하도 이미 또한 함께 들었습니다. 신의 말이 그 의혹을 상세히 해소하지 않음이 없는데도 그 의혹을 공격하는 것이 이르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의혹이 끝내 가지지 않는 것은 신이 신의를 얻지 못한 죄입니다.<sup>14)</sup>

⑤에서는 앞에서 밝혔던 내용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앞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거짓된 소문’에 대해 비유를 통해 반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목소리를 모사하는 상황에 빗대어 아주 작은 한 가지라도 빠뜨리게 되면 실정에서 벗어나다고 하였다. 실상과 소문이 매우 근사하지만,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실정과 소문이 다르다는 것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당시 김석주의 말을 직접 들었던 관리들을 증인으로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였다. 이 상소가 이원정이 한 말의 진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말의 실정은 알지 못하면서 소문으로 떠도는 말을 근거로 경솔하게 자신을 탄핵하려는 사람을 비판하였다.

⑥ 館에 숙직할 사람이 없어 소פק가 얼른 내려옴에 지난 밤 명을 받들어 따른 것은 다만 分義가 엄하고 이름이 간관의 글에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른바 事勢에 구애되었다는 등의 말은 생각건대, 신이 이원정을 비호하였던 것으로 의심하는 것인데, 이는 실로 매우 부끄러운 말입니다. 세상에 어찌 사람들에게 지적을 당하고 나무람을 받으면서 오히려 또한 대궐의 직책에 그대로 있으며 편안히 그 대열에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대각의 계사가 막 나옴에 곧바로 논변하는 것이 사체에 어그러짐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나 이 상소를 올리지 않으면 聖明께서 일의 진상을 다 아시지 못할 듯하고, 이 상소를 올리지 않으면 부족한 신이 또한 죄를 스스로 밝힐 수 없을 듯합니다. 또한 신이 맡고 있는 직책은 三司 중의 하나로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을 척결하고 한편으로는 혐의를 당겨 무릅쓰는 일입니다. 절로 이것은 대각의 일이니 신이 삼가 이 예로써 먼저 성상 아래에서 더러움을 덮어쓰고자 합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聖明께서는 저의 급박한 마음을 굽어살피시어 빨리 신의 직책을 遞職하시고 신의 죄와 벌을 의논하도록 명하시어 사람들의 말에 답하도록 하여 저의 분수를 편안하게 해주신다면 천만다행일 것입니다.<sup>15)</sup>

⑥에서는 이 소차의 끝부분으로 앞부분에 비해 주로 형식적인 면이 많이 보인다. 그러나 형식적인 문장 속에도 마지막 부분인 만큼 이 상소의 핵심이 들어 있다. 그것은 바로 김석주가 이원정을 비호한다는 의심에

14) “위의 책”, “噫, 畫人顔狀者, 失一毫髮, 則非眞面也, 寫人話言者, 錯一句字, 則非情實也, 而況傳聞其言辭者, 終必不若目擊聲貌, 并得心意之爲眞, 而今之偏信道塗之說者, 其於大臣以下六七人力爭之言, 每每聽鑿, 如水投石, 徒守執迹之見, 而不爲原情之論, 則臣竊以爲太激矣, 臣之此言, 非特政院聞之, 一館諸僚, 無不聞之, 非特館僚, 今日諫院之兩臣, 亦既共聞之矣, 臣言之, 非不詳解其惑, 而攻其疑, 亦不爲不至矣, 疑惑之終不祛, 此則臣之不見信之罪也.”

15) “위의 책”, “直館無人, 召牌過降, 前夜趨命, 祇爲分義之嚴畏, 而名騰諫官之章, 其所謂拘於事勢等語意, 槩疑臣以此避元禎, 此實可恥之甚者也, 世豈有被人指摘, 受人譏議, 而尙且廻翔禁直, 晏然於邇列者乎, 臺啓方張, 直與論卞, 非不知有乖於事體, 而不陳此疏, 則聖明必未得以盡獨事狀, 不陳此疏, 則微臣亦終無以自訟罪戾, 而且臣所帶, 係是三司之一, 一斥其非, 一引其嫌, 自是臺閣之事, 臣謹援此例, 冒先塵瀆於宸旒之下, 伏乞聖明俯鑑危衷, 亟命遞臣職名, 議臣罪罰, 以謝人言, 以安微分, 千萬幸甚.”

대한 해명이다. 이원정과 무엇인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해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부정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근의 1차 탄핵소에는 김석주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조근은 1차 탄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차 탄핵소를 올리고 여기게 김석주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김석주는 자신의 이름이 탄핵소에 거론된 점과 이원정과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상소를 올리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 부분은 〈인정언조근피사사직소〉의 마무리 부분이다. 표면적으로는 이원정 부자를 변론하는 듯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자신의 결백을 변론하는 것이다. 이 글의 모미는 바로 이점에 있다. 김석주의 의도는 사사로이 인재를 뽑았다는 혐의를 벗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직이라는 배수진을 치며 결백을 주장했던 것이기도 하다. 이는 마지막에 개인적인 소회를 드러내며 사직을 걸고 죄를 청하는 모습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포석으로서, 상소문의 간곡함을 더해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IV. 맺음말

본 연구는 미시적 관점에서 김석주의 소차 문학을 분석하였다. 163편에 달하는 김석주의 소차류 산문은 하나의 연구로 총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하나의 작품을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전체적인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하려 하였다. 이에 김석주가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쓴 소차문인 〈因正言趙根避辭職疏〉에 연구를 집중하였다.

본 연구는 한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는 관례를 벗어나, 작품의 실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입체적인 관점으로 상대방의 탄핵소와 피탄핵자 김석주의 변무소를 아울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탄핵소를 먼저 분석하고 이에 따른 김석주의 대응으로 제시된 변무소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총괄하면 다음과 같다. 김석주는 정언 조근의 탄핵소가 올라가자 자신만의 설득 전략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서두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탄핵소가 올라가게 된 상황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탄핵소에서 언급된 試官이 전한 말의 실상을 밝혔고, 이원정이 했다는 말과 관련된 떠도는 소문의 진상을 밝혔다. 핵심적인 진상을 다 소명한 뒤에는 상소를 올려 실상을 밝힐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서술하였다. 상소문을 마무리 지으면서, 무죄를 변론했던 본론 부분의 내용을 함축하고 부연하여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였고, 사직으로 대응하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인정언조근피사사직소〉에서 중요한 부분은 상황의 재현으로 소문의 허구성을 밝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이원정 부자의 무죄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소로 수신자인 현종은 김석주의 편을 들어주었다. 조근이 제시한 내용을 김석주의 주장대로 한갓 소문으로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이 논쟁의 결과에 따라 이담명의 급제는 인정되었고, 이원정도 아들의 시험에 영향력을 개입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눈여겨볼 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원정 부자에 대한 탄핵이 여러 사람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이원정 부

자가 직접 나서서 해명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안의 특성상 이원정 본인이 직접 해명할 경우 일종의 변명이 되기 쉽고 혐의만 더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엇보다도 이 시험에 고시관으로 참여하여 사스럽다는 혐의를 벗고자 했던 김석주가 적극 나서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원정 부자의 변론은 부수적으로 얻어진 것으로 되었다.

김석주는 〈인정언조근피사직소〉의 글에서 다양한 서술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는 상대의 탄핵 내용에 따라 유동적으로 고안해 낸 것이지만 매우 적절하게 대응하며 서술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결백은 물론 이원정 부자의 무죄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김석주 소차문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비록 거시적인 관점에서 김석주 소차문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틀은 제시하지 못했으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이 모여 김석주 소차 문학이라는 큰 실체가 보다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 방법이, 투식이 정형화된 다양한 한문 문체 기반의 자료 연구에 활용되어 개별 작家的 특성을 구명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석주, 『息庵遺稿』, 한국문집총간 145, 민족문화추진회.  
 김석주, 『古文百選』,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정 조, 『弘齋全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김광년, 「息庵 金錫胄의 疏劄類 散文 研究」, 『동방한문학』 44, 2010.  
 김대형, 「息庵 金錫胄의 奏議類 散文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김성애·정만조, 「朝鮮시대의 언로와 상소」, 『담수』 15, 담수회, 1986.  
 설석규, 「朝鮮 시대 유생 상소의 유형과 추이」, 『경북사학』 17-18 合輯, 1995.  
 정만조, 「朝鮮시대의 언로와 상소」, 『담수』 15, 담수회, 1986.

\* 이 논문은 2020년 5월 29일에 투고되어,  
 2020년 6월 2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0년 7월 13일까지 심사하고,  
 2020년 7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 Abstract ■

---

### A Study on Kim Seok-ju's Appeal Style Prose

- Focused on Descriptive Aspects of False Accusation Appeal Style, 〈因正言趙根避辭辭職疏〉 -

Lee, Young-hwan\*

Kim Seok-ju lived in an age of the rage of faction. In Joseon Dynasty period of the King Hyeonjong's and Sukjong's Reign, various political groups throw oneself heart and soul into a political contest. Kim Seok-ju the led political situation as the maternal relatives of the King. Appeal style prose is a political subject. Appeal style prose was means of self-defense from the political opponent. In this environment, Kim Seok-ju as writer are particularly inventive in this area with writing 163's appeal style prose. Appeal style prose is divided various field. In Appeals of innocent situation, Kim Seok-ju put efforts and many time. False accusation appeal style is centered on defense from opponents' attacks about aggressive appeals. Appeals of innocent situation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right to life and death. So it is written more precisely and dialectically than other appeals. In Kim Seok-ju's appeal style prose, one of them, 〈因正言趙根避辭辭職疏〉 have these features. These characteristics is prepared and quantity of contents with many characters. He reappear circumstances which is misunderstood to secure logic. Also he utilize a persuasion strategy that could clarify truth and succeed to prove his innocence.

**[Key Words]** Kim Seok-ju, Appeal Style Prose, Persuasion, Political contest, Logic

---

\* Assistant Professor, Hannam University